

피혁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

성별	여	나이	61세	직종	도장공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김 ○ ○ (61세, 여)은 1972년 9월 피혁회사에 입사하여 도장반, 세빙반, 선별반 등에 서 1993년 1월까지 20년 4개월 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, 1999년 11월에 기침과 객 담이 나타났고, 12월에 폐암으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화경

김 ○ ○은 32세인 1972년 9월 피혁회사인 D사에 입사하여 도장반 10년, 세빙반 5 년, 선별반 5년 등의 순서로 1993년 1월까지 20년을 근무하였다. D사에서는 상당량 의 크롬을 사용하였고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과 1991년 측정에서 크롬 을 사용하는 부서가 아닌 석회반 또는 가지반에서도 노출기준 미만이기는 하나 크롬 이 검출되었다.

3 의학적 소견

김 ○ ○ 은 1993년 퇴사후 재취업은 하지 않았다. 59세때인 1999년 11월에 계속되는 기침과 객담으로 개인의원에서 폐결핵 의증으로 치료 중 폐종양을 의심하였고 그 해 12월 C대학 D병원에서 폐암(선암, 좌우엽)을 진단받았다. 김 ○ ○은 흡연하지 않았으 나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흡연하고 있다.

4 고 찰

문헌 및 산업의학적 고찰에 의할 때 근로자 김 ○ ○ 이 근무한 D사과 같은 천연 또는 인조 피혁업체에서는 폐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6가 크롬은 사용하지 않고 3가 크롬을 사용한다. 따라서 근로자 김 ○ ○의 경우 3가 크롬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크지만,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6가크롬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.

5 결 론

김○○의 폐암(선암)은

- ①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인 흡연을 하지 않았고,
- ② 질병 발생 27년 전부터 20여년 간 천연피혁업체에서 크롬에 노출되었으나,
- ③ 이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아니고 3가크롬이므로
-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.